

정 정 신 고 (보 고)

2026년 7월 9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
삼성당신을위한삼성그룹밸류인텍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년 4월 29일

3. 정정 사유

-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(VaR 변동, 재무정보 확정)
- 법령 개정사항 및 전자증권법 반영 등

4. 정정요구 · 명령 관련 여부 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
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 운용전문인력	-	업데이트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	-	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대상	가. 투자 대상 (1)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※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3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 과일로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 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 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. ①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	가. 투자 대상 (1)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(삭 제)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	
10.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위험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주2)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97.5%VaR는 37.55% 입니다.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주2)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97.5 %VaR는 46.49% 입니다.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재무정보 2.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 의 운용실적	-	업데이트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-	라.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3. 집합투자기구 의 공시에 관한 사항	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가)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 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(추 가)	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가)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 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(법 시 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·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)